

단말장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합동으로 발표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24.11.14.)의 정부 주요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IP카메라 제조사가 제품 설계·제조 시 높은 보안수준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기능을 탑재하도록 의무화하여 해킹에 견고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영상정보처리기기(IP카메라)에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비밀번호 설정 조건 신설 (안 제29조 제2항)

나.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IP카메라의 예외조건 신설 (안 제29조 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기술기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단말장치의 기술기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 조문 대비표(별첨)

●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xx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말장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2-16호, 2022. 9. 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xx월 xx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단말장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단말장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 제목은 유지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가 갖추어야 하는 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비밀번호는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3조합 8자리 이상 또는
2조합 10자리 이상
2. 비밀번호를 연속하여 일정횟수(최대 5회) 잘못 입력한 경우, 일정 시간
(30초~60분) 접속 차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으로 동작하는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경우에는 국가표준 KS X 3078(디지털 방송통신 및 종합정보통신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적합성 평가 시험방법)에서 정한 별도의 시험방법 조건을 충족하면 제2항의 규정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 칙<제2025-xx호, 2025.xx.xx.>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신청한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비밀번호 등)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으로 영상정보의 조회·전송기능 또는 기기의 제어기능을 갖는 영상정보 처리기기는 유·무선망에 최초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설정 또는 변경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2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비밀번호 등) ① ----- ----- ----- ----- ----- -----.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갖추어야 하는 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비밀번호는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3조합 8자리 이상 또는 2조합 10자리 이상 2. 비밀번호를 연속하여 일정 횟수(최대 5회) 잘못 입력한 경우, 일정 시간(30초~60분) 접속 차단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으로 동작하는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경우에는 국가표준 KS X 3078(디지털 방송통신 및 종합정보통신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 장치의 적합성 평가 시험방법)에서 정한 별도의 시험방법 조건을 충족하면 제2항의 규정을 갖춘 것으로 본다.

현행	개정안
	<u>부 칙<제2025-XX호, 2025.X.X></u> <u>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신청한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u>